

수신 종교단체 대표  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(제7판)」 배포 안내

## 1. 관련

- 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제83조
- 나. 중앙방역대책본부-27907호(2022.9.23.)호
- 다. 중앙방역대책본부-1555(2023.1.26.)호

## 2.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,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」를 붙임과 같이 개정·안내합니다.

### 가. 주요 개정사항

- (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) 실내 전체 →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
  -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

#### <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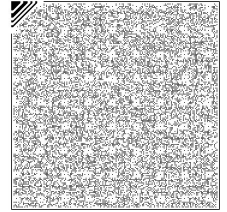
-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  - \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  - \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- ④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-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- (기타 내용 정비) 다빈도 질의사항에 따른 FAQ 등 정비

나. 시행: 2023. 1. 30.(월) 0시부터 시행

## 3. 위와 관련, 종교시설에서의 코로나19 재유행 방지를 위해 개정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착용 권고 상황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-발체 1부.  
2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 FAQ-발체 1부.  
끝.

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

행정주사보

박민규

행정사무관

차혜란

종무1담당관

전결 2023. 1. 27.

김규직

협조자 종무2담당관 정규식

시행 종무1담당관-322

(2023. 1. 27.)

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, 종무1담당관 / <http://mcst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2328 팩스번호 044-203-3462 / [bmg5055@korea.kr](mailto:bmg5055@korea.kr) / 대국민 공개